

20일부터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

- 6월 19일까지 전국 700여 취약시설 점검, 분야별 전문가 등 1,323명 점검반 구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공시설, 물류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7개반*(총 1,3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제1종, 제2종 시설물 중 위험·노후·중요도·최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700여개소**를 선정했다.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5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3개 기관이 분야별로 7개 점검반(도로, 철도, 항공, 물류, 주택, 건축, 공동구)구성

** 도로 시설 457개소, 철도 시설 120개소, 건축 시설 64개소, 주택, 항공, 물류 등 711개소

○ 특히,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의 핵심인력으로 편성하였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드론, 터널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신뢰도와 내실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은 현지 시정, 필요시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변화 및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	책임자	과 장	이성민 (044-201-4598)
		담당자	사무관	김경수 (044-201-3577)
			전문위원	강건욱 (044-201-4591)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건축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p>외의 건축물</p>	<p>급미터 이상의 건축물</p> <p>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p> <p>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p>	<p>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p> <p>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p> <p>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p> <p>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p>
<p>4. 옹벽 및 절토사면</p>		<p>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p> <p>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p>
<p>5. 공동구</p>		<p>공동구</p>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중 발체